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 제외〉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98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23.
3. 회부연월일 : 2025.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투병과 중 육군의 경우 방공과·공병과·정보통신과·항공과를, 해군의 경우 항공과·정보과 등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정보 등 첨단 전투병과 중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병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기인 2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전역되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여 전투관련 분야 장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전투 관련 분야 장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병과장 임명) ① ~ ③ (생략)	제21조(병과장 임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④ ----- ----- <u>전투병과</u> <u>를 제외한 병과 중에서 대통령령</u> <u>으로</u>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병과(兵科)란 군인이 담당하는 전문 분야를 의미하며, 병과장은 해당 병과를 대표하여 교리·정책 수립 및 무기체계 개발 관련 제언 등을 총괄하는 직위임.

- ☐ 현행법은 병과장 임명 대상 병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¹⁾, 시행령에서는 육군 15개, 해군 13개, 공군 8개, 해병대 9개 병과에 병과장을 두고 있음.

[각 군별 병과장 임명 직위(「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

육군(15개)	방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해군(13개)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공군(8개)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해병대(9개)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주: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전투병과에 해당함

- ☐ 개정안은 전투관련 분야 장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병과장의 임기 제한(2년)이 적용되지 않도록 전투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전투병과의 경우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 전문성이 중요한데, 동일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는 전투력 향상과 부대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 군 조직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군인사법」 제21조(병과장 임명) ① 병과장(兵科長)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 병과장의 임명 대상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 개정보다는 대통령령 개정 논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서 제시한 내용은 군 인사 및 병과 운용과 같이 행정적 성격이 강한 사안으로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국방부의 군 운영 여건과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한 병과체계 개편 과정에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전투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 병과장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인사적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국정과제에 따른 병과체계 개편 및 통·폐합과의 연계적인 검토가 필요²⁾하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2) 2025년 9월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래 국방 및 작전환경을 고려한 각 군별 병과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함. 국방부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이후 대병과 체제로의 전환 등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 소요까지 도출해 제도 전환 근거를 마련할 방침임